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 4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I .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709호

다.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마. 추경예산 편성 사유

- 코로나 19 장기화 및 재확산 등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비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 하고, 이와 동반하여 행사성 경비 등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감추경 추진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조 7,012억 1백만원 보다 △10억 59백만원(0.1%)이 감소한 1조 7,001억 42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6억 62백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005억 75백만원보다 △10억 59백만원(△0.1%) 감소한 1조 2,995억 16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22억 85백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9억 79백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7억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4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가율 (%)
총 계	1,700,142	1,701,201	△1,059	△0.1%
일 반 회 계	65,662	65,662	-	-
교통사업특별회계	1,299,516	1,300,575	△1,059	△0.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2,285	262,285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2,979	62,979	-	-
도시개발특별회계	9,700	9,700	-	-

□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4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3조 1,327억 6백만원 대비 178억 88백만원(0.6%)이 증가한 3조 1,505억 94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93억 39백만원으로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860억 13백만원보다 △10억 59백만원(△0.1%)이 감소한 1조 2,849억 54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2억 3백만원으로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806억 27백만원보다 189억 47백만원(1.6%) 증가한 1조 1,995억 74백만원으로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5억 24백만원에서 예산변동은 없으나, 개별사업에 일부 변동 있음

※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4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3,150,594	3,132,706	17,888	0.6%
일 반 회 계	449,339	449,339	-	-
교통사업특별회계	1,284,954	1,286,013	△1,059	△0.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0,203	140,203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99,574	1,180,627	18,947	1.6%
도시개발특별회계	76,524	76,524	-	-

II.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예탁금 및 예수금 46억원

〈감액 내역〉

- 기타사용료(주차부대시설) △5억 4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51억 15백만원 등 3건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99,516	1,300,575	△1,059	△0.1%
기타사용료(주차부대시설)	17,098	17,602	△504	△2.9%
주차요금 수입	30,577	35,692	△5,115	△14.3%
국고보조금(차로이탈방지)	20,371	20,411	△40	△0.1%
예탁금 및 예수금	171,309	166,709	4,600	2.8%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도시철도 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11억 70백만원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 3억원 등 3건

〈감액 내역〉

- 차없는거리 운영 △6억 69백만원
-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차장 건립 △6억 50백만원 등 8건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4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84,954	1,286,013	△1,059	△0.1%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100	500	△400	△80.0
예비비(교통관리계정)	6	-	6	순증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점검 용역	300	-	300	순증
장애인콜택시 운영	58,900	59,550	△650	△1.1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	80	△80	△100.0
도시철도 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1,170	-	1,170	순증
예비비(주차관리계정)	39	46	△7	△15.2
차없는거리 운영	3,105	3,774	△669	△17.7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921	1,451	△530	△36.5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464	634	△170	△26.8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560	3,590	△30	△0.8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135억 68백만원
-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19억 64백만원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25억 30백만원
-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8억 85백만원

〈감액 내역〉 : 없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4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199,574	1,180,627	18,947	1.6%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1,009	77,441	13,568	17.5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20,682	18,718	1,964	10.5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6,173	3,643	2,530	69.4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20,418	19,533	885	4.5

5.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5억원

〈감액 내역〉

-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5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76,524	76,524	-	-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	500	△500	△100.0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500	-	500	순증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총괄

- 이번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1조 7,012억 1백만원 대비 △10억 59백만원(0.1%)이 감소한 1조 7,001억 4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3조 1,327억 6백만원 대비 178억 88백만원(0.6%)이 증가한 3조 1,505억 94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6,355억 39백만원 대비 10억 59백만원(△0.1%) 감소한 1조 6,344억 80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조 6,833억 67백만원 대비 178억 88백만원(0.7%)이 증가한 2조 7,012억 55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세입, 세출예산안 모두 별도 계상내역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3,005억 75백만원 대비 △10억 59백만원(△0.1%) 감소한 1조 2,995억 16백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60억 13백만원 보다 △10억 59백만원(△0.1%) 감소한 1조 2,849억 54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 증액사업은 코로나 관련 물류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조성(11억 70백만원),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3억원) 등 총 3건이며,
 - 감액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사취소로 차없는거리 운영(△6억 69백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6억 50백만원) 등 총 8건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세입, 세출예산안 모두 별도 계상내역 없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06억 27백만원 보다 1.6% 증가(189억 47백만원)한 1조 1,995억 74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 코로나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 관련 9호선 재정지원(135억 68백만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1~8호선 코로나 대응지원(8억 85백만원) 등 4건이며, 감액사업은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도계상 내역이 없으며,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65억 24백만원에서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내용이 일부 변동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증액사업은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5억원)
 - 감액사업은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5억원)임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별 설명서 p.495)

- 동 사업은 나눔카¹⁾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라는 친환경 목표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나눔카 전기차 대여료²⁾를 30%(서울시 및 사업자 각 15% 할인)할인하여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5억원 중 4억원(80%)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의 대여료 감면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간의 운영 결과 나눔카 전기차 총 이용건수는 5,578건³⁾으로 일평균 이용자는 93명⁴⁾에 그쳤고 이는 전체 나눔카 일평균 이용자수

1) 나눔카 4개 사업자(총 2,076개소 6,028대)

그린카(897개소 2,072대), 쏘카(1,277개소 3,557대), 딜카(219개소 296대), 피플카(76개소 103대)

※ 전기차 사업자(쏘카, 그린카)

2) <나눔카 전기차 대표 차종 요금표> : 할인금액 이전

사업자	쏘카		그린카	
	아이오닉	아반떼	아이오닉	아반떼
대여요금(1일당)	180,000원	95,000원	180,000원	95,000원
대여요금(시간당)	18,000원	9,500원	18,000원	9,500원
주행요금(km당)	50원	170원	50원	160원

-쏘카와 그린카의 아이오닉의 일일 요금은 180,000원이나 비슷한 차종인 아반떼의 일일 요금은 95,000원 수준임

3)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사업' 이용현황(5.1~6.31) : 전기차 사업 참여 쏘카, 그린카 대상

-이용건수: 총 5,578건/ 이용시간: 총 1,457,020분/ 보조금액: 23,362천원(총 이용금액 155,749원의 15%)

4) 나눔카 전기차 보유현황

사업자명	계	쏘카	그린카	딜카	피플카
보유대수	376	270	104	2	0

※ 전기차 사업 참여 쏘카(270대)+그린카(104대)=총 374대

7,985명의 1.1%에 불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80%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의회는 '20년도 도시교통실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료를 30% 할인하더라도 충전 불편, 짧은 주행거리, 소형차 위주 구성 등 나눔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인프라 구축 선행 등이 필요하고,

단순한 요금인하 정책만으로는 나눔카 전기차 이용 활성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하여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3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22년까지 전체 나눔카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순히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나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사업별 설명서 p.499)

- 동 사업은 수도권 통합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수도권통합요금 정산검증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수도권 통합요금제⁵⁾는 '04년 7월 서울시가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할인 요금제를 시행한 이후 '09년부터 수도권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⁶⁾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음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⁷⁾은 교통카드 정산체계가 복잡해지고, (주)티머니⁸⁾가 시행 중인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정산의 신뢰성을 놓고 교통운영기관간의 이견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그간 수도권교통본부⁹⁾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음

5) 수도권 내 전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갈아 탈 때마다 기본운임을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운임제도

6)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적용 대상

- 서울버스 : 서울특별시 관할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 경기버스 : 경기도(시·군) 관할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 인천버스 : 인천광역시 관할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 수도권 전철 :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운영하는 수도권의 전철 및 지하철 전노선

7)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03.11.3) 제3조(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본 사업의 영역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시스템 구축 및 사업비 조달
2. 교통카드(노인교통카드 등 포함) 발급, 충전, 정산 및 시스템 운영
3. 키 값, 보안알고리즘,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보유 및 관리
4. 주차장, 소액민원 등 공공부문 부대사업확대
5.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후사업의 다각화

8) 2003년 (주)한글스마트카드 설립 → 2019년 (주)티머니 사명변경

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 근거)

○ 동 사업은 '19년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산¹⁰⁾되고 정산검증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초 (주)티머니가 정산검증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¹¹⁾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시행¹²⁾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정산검증을 추진함으로써 검증 결과의 공공성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¹³⁾이 마무리 되었지만 환승할인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간의 재정부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¹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산검증 용역의 신뢰성이 담보될 것인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사업시행합의서¹⁵⁾에 따르면 정산 검증에 대한 비용은

10)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2019.4.19.)

11) 2020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 입찰시작 : 2020. 7. 8. - 입찰취소 : 2020. 7. 23.

- 취소사유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2320(2020.7.22. 접수)에 따라 진행중인 [2020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입찰을 취소

12)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2664(2020.7.28.)

- 일시 : 2020.7.24. / 참석자 : 수도권 지자체 및 교통운영기관 담당자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발주기관 : (기존) 티머니 (신규) 서울시

13)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2020.2)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공동시행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인천시의 환승손실분담 비율(46%)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 노력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는 적정성 판단이 어려웠음

14) 경인 vs 서울 '수도권 통합환승' 연구용역 마무리됐지만 갈등 여전(중부일보, 2020.6.17.)

15)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13.2.1)

○ 제16조(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제6항

5. 사업시행자는 2년 주기로 교통운송기관 협의체가 주관하는 통합정산 투명성 검증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인 (주)티머니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에도 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부족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별 설명서 p.502~516)**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502)은 서울시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협약¹⁶⁾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74억 4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금을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135억 68백만원(17.5%)를 증액 편성한 것임

-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사업별 설명서 p.506)은 9호선 2·3단계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동의¹⁷⁾와 서울교통공사 협약¹⁸⁾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87억 1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금 부족분 19억 64백만원(10.5%)을 증액 편성한 것임

1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2013.10.23.), 제18조(관리운영비) 및 부록 3. 관리운영비

17)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14. 4. 24 의결)

1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2017.9.21.),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510)**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¹⁹⁾에 근거하여 우이신설선의 운영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6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용 부족분 25억 30백만원(69.4%)을 증액하는 것임
-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별 설명서 p.514)** 사업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지하철 1~8호선의 상가 임대료 정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8억 85백만원(4.5%)을 증액하는 것임

※ **지하철 관련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			사업구분	4회 추경 주요사업내용
	1회	3회	4회		
총 계	5,274	19,058	18,947	-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31	2,726	13,568	기정증액	- 코로나19로 인한 민자철도 및 9호선 2·3단계 운영비 부족분 지원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 운영관리	279	432	1,964	기정증액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41	289	2,530	기정증액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23	15,611	885	기정증액	- 임대료 지원(50%) 감면 · 임대료지원(2~7월분)

- 1~8호선 상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의 경우 서울시 정책²⁰⁾에 따라 상가 임대료 50% 감면에 따른 추가 정산분을 추경 편성하는 것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20)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2020. 3. 2)

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추경예산 수립 당시에는 6~7월 임대료 감면액을 추정하여 추가임대료(8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²¹⁾, 당초 7억원 예산이 편성된 그룹별 복합상가는 현재까지 6,7호선 그룹별 복합상가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예산편성 당시 추정된 임대료 지원금과 9월 현재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승객감소로 피해를 입은 지하철 운영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그간 지하철 분야에 2차례에 걸쳐²²⁾ 방역 및 상가 임대료 지원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감소가 운영수입 감소로 이어져 9호선 및 우이신설선과 같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줄어든 운영수입을

21) 1~8호선 임대료 인하 추정 요구액(서울시 도시철도과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상가유형	대상 (개소)	2~7월 총소요액			3차 추경액	4차 추경액)
		2~5월 자원(A)	6~7월 예상액(B)	총소요액 (A)+(B)		
총계	2,754	8,446	5,245	<u>13,691</u>	<u>12,806</u>	<u>885</u>
개별상가	522	2,877	1,506	4,383	4,426	△43
복합상가	217	1,100	584	1,684	2,076	△392
네트워크상가	282	4,185	2,210	6,395	5,075	1,320
조례편의시설	1,203	284	145	429	429	-
그룹별복합상가*	351	-	700	<u>700</u>	700	-
낙찰예정상가*	179	-	100	100	100	-

22) 제1회 추가경정예산(144억 13백만원), 3회 추가경정예산(294억 95백만원)

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보전해 줄 것을 요청받아 편성하는 것임

○ 다만, 9호선 재정지원(135억 68백만원) 추정 예산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금년 1~3분기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에 요청함에 따라 편성하는 것임

○ 서울시는 9호선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액 전액²³⁾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13년 10월 체결한 변경협약 제36조 및 제38조 등에 따르면 “불가항력사유”를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하고

“불가항력사유”에 따른 비용과 손실은 우선적으로 보험금으로 지급 하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손실에 대해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는 80% 부담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

23) 서울시 제출자료(4차 추경 - ('20.1월~9월 수입감소분) 2019년 대비 2020년 운수수입 감소액)

(단위 : 원)

월	2019년	2020년	차이
1월	7,904,812,370	7,599,544,503	- 305,267,867
2월	6,714,921,812	6,348,676,316	- 366,245,496
3월	8,040,840,047	5,254,999,442	- 2,785,840,605
4월	8,410,446,242	5,578,992,095	- 2,831,454,147
5월	8,312,909,871	6,119,029,747	- 2,193,880,124
6월	7,662,791,319	6,543,997,500	- 1,118,793,819
7월	8,198,212,722	7,084,904,360	- 1,113,308,362
8월	7,765,526,100	6,022,168,706	- 1,743,357,394
9월	7,486,378,535	6,376,413,924	- 1,109,964,611
3분기 계	70,496,839,018	56,928,726,593	- 13,568,112,425

※ 데이터 근거 : 티머니 공문_월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내역 통보('19.1~ '20.7까지)

※ 변경협약에 따른 '불가항력사유' 구분

구분	비정치적불가항력 사유	정치적불가항력 사유
내용	1. 지진, 홍수, 해일,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및 위험물, 지장물 발견 2.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3. 지하철 산업의 파업 4. 정부의 정책변경, 경제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5.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외의 사유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등에 준하는 사유 법령 제개정
분담비율	우선 가입된 보험금으로 보전 ²⁴⁾	
	서울시 80% 부담	서울시 90% 부담

- 따라서 서울시가 금번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먼저 보험금 처리 가능 여부 검토, “불가항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으로 최대 80%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25억 30백만원)**은 ‘09년 4월 서울시와 (주)우이트랜스²⁵⁾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64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를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²⁶⁾²⁷⁾

24) 완성토목공사물 보험 및 근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25) ‘14년 3월 사명이 우이트랜스에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로 변경됨

26) **실시협약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27)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서울시와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가 체결한 협약서의 사유와 유사함

간주하여 우이신설경전철(주)²⁸⁾에서 요청한 '20년 운영손실 예상 비용 전액을 추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는 협약에 따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할 수 있으나 동 협약 제65조에서는²⁹⁾ “불가항력 사유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이신설경전철(주)의 공문시행일('20년 5월 20일)³⁰⁾을 고려할 때 운영손실분 발생시기를 1월 1일이 아닌 5월 13일부터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협약 제64조에서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운영손실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손실비용 전액을 편성 지원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과 우이신설선 추경 요청 예산에 대해 산출 근거 및 협약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8) '14년 3월 사명이 우이트랜스에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로 변경됨

29) 실시협약 제65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철구 및 이의신청)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30)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수입 손실 보전 및 사업정상화 방안 협의 요청(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경영지원실-2020-484, 2020.5.20.)

■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별 설명서 p.524)

- 동 사업은 지축차량기지 내 택배분류장 등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11억 70백만원을 편성하는 것임
- 지난 7월 중앙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 사업을 발표하였고, 그 중 “SOC디지털화” 분야에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택배 등 생활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11개소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³¹⁾
- 동 사업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국토부 추경예산이 확보³²⁾되고, 이에 따른 매칭비율(30:30:40)³³⁾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3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 뉴딜 : 4. SOC 디지털화 -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 (육상물류)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의정부, 화성, 구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32) 2020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예산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요청(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42, 2020.7.29.)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00백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4,000백만원, 서울교통공사(1,200백만원))

33) 차량기지 물류시설 시범개발 계획(안)(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

○ 가설 택배분류장 사업비 : 총 149억원

- 재원마련 : 국고지원 30% + 市 출자 30% + 공사부담 40%

(단위 : 억 원)

구분	총사업비	자부담(40%)	국고보조금(30%)	시비(30%)	집행연도
지축	39	15.6	11.7	11.7	2020년
도봉	73	29.2	21.9	21.9	2021년
모란	37	14.8	11.1	11.1	2022년
총 계	149	59.6	44.7	44.7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등 도심생활물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과 운수수익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도시철도 중심의 공동물류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³⁴⁾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편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사업의 국비예산(12억원)이 서울시를 통해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로 직접 교부³⁵⁾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도 국비 사업예산에 대한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본 물류센터가 차량사업소 내에 설치되는 만큼 열차 및 관련시설의 보안대책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며, 물류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등, 사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별 설명서 p.521)

- 동 사업은 대형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³⁶⁾ 장착을 지원

34) 차량기지 물류시설 시범개발 계획(안)(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

- 차량기지 가설 분류장 시범개발(지축, 도봉, 모란 차량기지)
- 공동 분류장 개발(대상 10개 기지)

35) 예산(안) 총괄

교부 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x-) 1,170,000	(x-) 0	(x-) 1,170,000
출자금	(x-) 1,170,000	(x-) 0	(x-) 1,170,000

36)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함으로써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80백만원³⁷⁾ 전액(국비 40백만원 포함)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년 신규 제작·수입되는 차량 중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³⁸⁾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법」 개정³⁹⁾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은 경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며 '20년 1월부터는 미장착시 과태료⁴⁰⁾ 부과 대상임
- 동 사업은 '20년 신규 화물·특수자동차 200대 지원예산으로 80백만원⁴¹⁾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등록차량 87대를 확인한 결과 전체 등록 차량이 차량출고시 옵션(자부담)으로 의무 장착

-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션,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경고를 알려주는 장치

37)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비:시비(5:5) 매칭

38) 지원대상: 일반·벤형 및 모든축의 특수용도형 화물차, 4축이상 견인형 및 모든축의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차

구 분	화물차			특수차			비고
	일반형	벤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지원기준	4축이상	4축이상	모든축	4축이상	모든축	모든축	

※ 제외대상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39)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40)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2.개별기준 제15의2호

-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 [시행 2020. 1. 1.]

41) 총 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백만원, 시비 40백만원)이며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기준으로 최대 40만원 지원(국비+시비), 40만원 X 200대=80백만원

함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임

- 하지만, 국토교통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⁴²⁾에서는 “차로이탈경로 장치를 장착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되 미지급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량 출고시 자부담으로 설치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는 올해 출시된 모든 차량이 출고시 차량이탈 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 예산의 집행실적이 없어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동 사업은 '18년 및 '19년에도 사업비⁴³⁾를 편성하였으나 각각 6억26백만원, 7억14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20

42) 국토교통부 ‘2020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4p)

43)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지원대수	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E)	집행잔액 (C=D-E)
2018	720	-	720	94	235	13.1%	626	0
2019	1,640	626	2,266	1,552	3,880	68.5%	714	0
2020	80	714	794	113	283	14.2%	-	681

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차 없는 거리 운영(사업별 설명서 p.527)

- 동 사업은 도심권 도로에 차 없는 거리 행사 시행과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지원하여 보행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 개최가 불가하여 6억 69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년 예산으로 당초 43억 7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난 제3회 추경시 6억원을 감액하였고, 이번 제4회 추경시 6억 69백만원을 추가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2020년도 차 없는 거리운영 사업 추경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년 본예산	3회 추경시 감액	4회 추경시 감액	총 감액	최종예산
차 없는 거리운영 사업	4,374	△600	△669	△1,269	3,105

- 감액세부내용⁴⁴⁾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의 경우 2억 9백만원이

감액된 12억 43백만원 중 51.1%(6억 36백만원)를 집행하여 6억 7백만원이 남았으나, 하반기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할 때 행사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별 설명서 p.532)

- 동 사업은 걷자 페스티벌 및 걷기 행사를 통해 도심 교통수단으로서의 ‘걷기’의 역할 및 경험을 공유하고, 보행권 등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억 51백만원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억 30백만원(36.5%)을 감액하는 것임

※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921	1,451	△530	-36.5

- 동 사업의 주요 감액사항⁴⁵⁾으로 ‘Walk21 국제컨퍼런스’(3억원)와

44) 2020년도 차 없는 거리운영 사업 감액세부내용

구 분	제4회 추경관련(백만원)			예산집행(백만원)	
	추경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집행액(C)	잔액 (A-C)
계	3,105	3,774	△669	2,376	729
사무관리비	100	300	△200	0	100
행사운영비	1,243	1,452	△209	636	6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	22	0	5	17
연구용역비	0	200	△200	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40	1,800	△60	1,735	5

45)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감액세부내용

‘걷자 페스티벌’ 행사(1억 80백만원) 규모 축소이며, ‘걷자 페스티벌’의 경우 올해 예산집행실적이 없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행사마저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잔여예산(2억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 혹은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보행권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발굴하여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원활한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대행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향후 행사규모 축소⁴⁶⁾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집행과 정산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을지로,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별 설명서 p.538~545)

- 동 사업은 사대문안 차도 축소를 통해 보행공간을 마련하여 도심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으로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에서 5억원(100.0%)을 감액하고,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5억원(100.0%)을 신규 증액하는 하는 것임

구 분	제4회 추경 관련(백만원)			예산집행(백만원)	
	추경안(A)	기정예산(B)	증감(A-B)	집행액(C)	잔액(A-C)
계	921	1,451	△530	463	458
행사운영비	550	900	△350	383	167
Walk21 국제컨퍼런스	550	850	△300	383	167
걷기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0	50	△50	0	0
민간행사사업보조(걷자페스티벌)	200	380	△180	0	200
사무관리비	171	171	-	80	91

46) 2020 Walk21 서울 국제보행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 계약변경 계획 : 보행정책과-10756호('20.8.10)

※ 을지로,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500	500	0	0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0	500	△500	-100.0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500	0	500	100.0

- 을지로 사업은 '19년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교통안전시설심의가 미완료⁴⁷⁾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회 추경시 35억 24백만원(87.6%)을 감액한 바 있고, 제4회 추경시 추가 감액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올해에는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사업의 특성과 일정을 고려하지 못해 제3회 추경시 과소하게 감액하여 추가 추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2020년도 을지로 사업 추경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년 본예산	3회 추경시 감액	4회 추경시 감액	총 감액	최종예산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4,024	△3,524	△500	△4,024	0

- 퇴계로 사업은 '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9년도 공사시행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⁴⁸⁾

47) 을지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요청(보행정책과-1592, '19.8.27)

48) 교통안전시설심의 : 요청(보행정책과-3275, '19.3.7), 결과 통보(교통관리과-14805, '19.6.14)

및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심의⁴⁹⁾ 등의 지연으로 공사가 '19년 11월에 착수됨에 따라 '19년도 예산 94억 92백만원 중 92억 90백만원(97.9%)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퇴계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 이월액	'20년 예산액	'20년 예산현액	'20년 8월 집행액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9,290	0	9,290	1,350

동 사업의 증추경은 심의지연 등으로 당초 '20년 8월 완공에서 '21년 초로 공사기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말 및 야간공사를 통한 공기 단축으로 '20년 10월까지 완공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증액⁵⁰⁾하는 것으로 공사구간 주변 교통혼잡 기간 감소, 퇴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⁵¹⁾, 공정률(71%)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자원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사업비 집행률(14%) 현저히 낮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출처리가 필요하며, 향후 돌관공사⁵²⁾를 통해 공정률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9)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 요청(보행정책과-778, '19.8.12) , 결과통보(교통운영과-4908, '19.10.15)

50) 「퇴계로(2단계) 도로공간 재편사업 관련」 사업비 변경(추가) 계획 : 보행정책과-9894호('20.7.21)

51) '20년 3~6월 퇴계로 교통량(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구 분	3월	4월	5월	6월	증가율
월 교통량	820,825	816,284	861,050	867,151	1.8%
일수	31	30	31	30	-
일평균 교통량	26,478	27,209	27,776	28,905	3.0%

52) 돌관공사 :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별 설명서 p.546)

○ 동 사업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자전거 축제 등 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불가하여 1억 70백만원(26.8%)을 감액⁵³⁾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년 예산으로 당초 8억 9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시 2억 60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제4회 추경시 1억 70백만원을 추가 감액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1억원, '자전거 대행진' 70백만원의 예산을 축소하는 것임

당초 서울시에서는 올해 1,500여명 참석 규모의 '자전거 퍼레이드' 2회, 5천여명 규모의 '자전거 대행진' 1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10월 이후 행사추진을 준비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행사개최 또한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예산불용이 예상되며, 향후 행사추진가능성 등을

53)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감액세부내용

구 분	제4회 추경관련(백만원)			예산집행(백만원)	
	추경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집행액(C)	잔액 (A-C)
계	464	634	△170	180	284
사무관리비	242	242	-	110	132
행사운영비	100	200	△100	59	4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	12	-	11	1
민간행사사업보조	110	180	△70	0	110

고려하여 합리적 예산운용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0년도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경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년 본예산	3회 추경시 감액	4회 추경시 감액	총 감액	최종예산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894	△260	170	430	464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사업별 설명서 p.550)

- 동 사업은 보행안전과 도로소통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5억 90백만원 중 30백만원(0.8%)을 감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은 매년 서울시 자치행정에서 실시하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⁵⁴⁾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자치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평가하는데 활용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치구 직원 업무과중 및 기존업무 공백발생 우려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전액 감액⁵⁵⁾되어 자치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평가를 미추진함에 따라 평가시 활용코자 사무관리비로 편성⁵⁶⁾된 ‘자치구 주차위반 실태조사’ 비용 30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임

54)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핵심사업에 대해 자치구 실적을 서울시가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30억원)을 교부하는 사업 : 20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2126, '20.1.23.)

55) 자치행정과-9468('20.4.22.) : 2020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변경 추진 안내 및 지표 수정 요청

56)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발간번호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사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560	3,590	△30	-0.8

- '19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포함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평가지표⁵⁷⁾는 스마트불편신고 접수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 자치구 단속건수 대비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 긴급차로(소방차통행로) 구간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건수임을 고려할 때

교통정보과 과태료부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서 자체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치구 주차위반 실태조사'와 같은 별도의 용역은 불필요하므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며, 향후 유사예산을 편성하는 것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1741000-000107-10, p101)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

57)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 : 교통지도과-7192('19.10.10.)